

제25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건소 의약과 소관)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587호
- 나. 제출자 : 고영찬 의원
- 다. 제출일자 : 2024. 8. 22.
- 라. 회부일자 : 2024. 8. 22.

2. 제안이유

항암치료 과정에서 신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 증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가발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암환자의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북돋아 주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가발구입비 지원(안 제3조)
- 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안 제4조 및 제5조)
- 라. 지원신청 및 지원제한(안 제6조 및 제7조)
- 마. 환수조치 및 시행규칙(안 제8조 및 제9조)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 「암관리법 시행령」 제10조
-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항암치료로 인한 탈모증세로 인해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까지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자존감 향상과 치료의지를 강화할 것으로 판단되어 그 제정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용산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20개 자치구에서 운영 중에 있음.
- 동 제정안은 총 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목적)에서는 본 제정 조례의 목적에 대해서,
 - 안 제2조(정의)에서는 이 조례의 지원 대상이 암환자이므로 이를 정의하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용어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가발구입비 지원)에서는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증세가 발생한 암환자에게 가발구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에 대하여,
 - 안 제4조(지원대상)에서는 가발구입비의 지원대상 요건에 대하여,

- 안 제5조(지원내용)에서는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가발구입비의 지원 금액을 최대 7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 인천시와 서울시 용산구는 70만원이나 대전 대덕구 및 부산 동래구는 50만원 등으로 자치단체마다 금액이 다소 다름.
- 안 제6조(지원신청)에서는 가발구입비 지원을 받기 위해 제출하여야 할 신청 서류와 절차를 규정하였고,
- 안 제7조(지원제한)에서는 지원수혜를 중복적으로 받지 못하도록 제한 문구를 명시하고 있음.
- 안 제8조(환수조치)에서는 잘못 지급된 경우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예산 집행의 명확성을 강조하였음.

○ 국가암정보센터 자료에 의하면 전국 단위 암발생 통계를 산출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2011년까지 남녀 전체에 대한 모든 암의 발생률은 연 평균 3.3%의 증가 추세이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평균 -3.1%의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15년부터 최근까지는 뚜렷한 증감 추세는 보이지 않고 있음.



[모든 암 연도별 연령표준화발생률 추이]

- 참고로 2021년 암의 발생자 수는 총 277,523명이며, 남자는 143,723명, 여자는 133,800명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대수명(83.6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8.1%였으며, 남자(80.6세)는 5명 중 2명(39.1%), 여자(86.6세)는 3명 중 1명(36.0%)에서 암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 본 제정안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소관 부서에서는 조례가 제정되면 관련 절차 등을 이행함에 있어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임.
- 본 제정안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붙임 : 관계법령 1부. 끝.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2024. 1. 9.>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 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 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 7.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암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7. 30.] [대통령령 제34785호, 2024. 7. 30., 타법개정]

제10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대상·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소득과 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제1호의 경우에는 그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1. 4. 6.>

1.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중 암환자. 다만, 의료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18세가 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의료비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암환자

3.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

4. 삭제 <2021. 4. 6.>

② 삭제 <2016. 7. 26.>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은 보건소장은 관계기관에 의료비 지원 대상자(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6.>

④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관할 보건소 소속 공무원이 의료비 지원의

신청을 대리하려는 경우에는 암환자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으로부터 의료비 지원의 대리 신청에 필요한 자필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동의 서면을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받아야 한다. <신설 2021. 4. 6., 2024. 7. 30.>

⑤ 의료비의 지원한도액, 지원기간 및 지급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 4. 6.>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4. 1.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301호, 2023. 12. 29., 일부개정.]

제2조(의료비 지원 대상 선정기준) 영 제10조 제1항에 따른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 선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2. 성인 암환자

가. 건강보험가입자

구분	기준
지원대상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암종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 질병분류는 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함

나. 의료급여수급자

구분	기준
지원암종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 질병분류는 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함